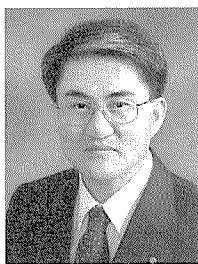


한·일 PDP 분쟁을 통하여 본 국제특허분쟁의 양상 및 대응방안

- 특허침해품 통관보류제도를 중심으로-



서 천석
변리사·변호사(미국)

지적재산전략을 제도적 관점, 산업정책적 관점, 교육체제 관점 등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통합할 것이 요구되며 정부부처간 유기적 공조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I. 머리말

2004년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도쿄 세관은 삼성SDI와 LG전자와의 PDP 제품에 대해 통관보류조치를 내렸다. 이는 우리 기업의 PDP 제품이 자국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일본 기업들(후지쯔사와 마쓰시타사)의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도쿄 세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내려진 조치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깊은 우려를 전달하였으며 금번 통관보류조치가 양국간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한·일 기업간의 PDP 분쟁의 경위와 일본 세관의 통관보류조치의 배경 및 의미를 조명해 보고 나아가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정책대안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II. 특허침해품에 대한 통관보류제도

먼저 작금의 한·일 PDP 분쟁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세관의 통관보류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도적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 통관보류제도

통관보류제도는 수출·입 물품이 관세법이 정한 의무사항의 위반 또는 국민보건상의 위해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세관에서 잠정적으로 통관을 보류해 두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관세법상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물품에 대해서 권리자의 요청하에 통관보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통관보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TRIPs(제51조)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통관조치의 대상으로 상표권 및 저작권은 의무사항으로, 특허권 등 기타 지적재산권은 각국의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일본 및 EC의 특허침해품 통관보류제도

일본과 유럽은 2003년과 1999년에 각각 관세관련법을 개정하여 우리 관세법과는 달리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도 세관이 독자적 판단하에 통관보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일본 관세정률법상의 통관보류제도를 살펴보면, 세관장이 직권 내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특허침해물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잠정조치로서 해당물품의 통관보류를, 침해가 인정되면 몰수·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조치들은 세관의 독자적 판단 하에 매우

빠른 시일 이내(1개 월)에 이루어지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러한 일본의 특허침해품 통관보류제도는 일본 정부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적재산전략의 산물로 평가된다.

III. 최근 한·일간 PDP 분쟁

1. 분쟁의 경위

(1) 삼성SDI vs. 후지쯔

2003년 3월, 후지쯔의 라이센스 계약 요청에 대해 삼성SDI는 자체 검토 끝에 특허무효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4년 2월 7일 미국 법원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후지쯔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도쿄 세관에 수입금지조치를신청함으로써 2004년 4월 21일 마침내 도쿄 세관의 통관보류조치가 내려졌다. 그 후 삼성SDI와 후지쯔는 특허협상에 의해 분쟁을 타결하였다. 일본 기업이 통관보류제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특허공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2) LG전자 vs. 마쓰시타

삼성SDI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쓰시타 측의 라이센스 요청으로 분쟁이 촉발되었다.

이후 마쓰시타의 신청에 따라 2004년 11월 11일 도쿄 세관의 통관보류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우리나라의 법원과 무역위원회에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였으며 2004년 11월 29일 무역위원회가 수입 및 판매

〈삼성SDI vs. 후지쯔의 PDP 분쟁 경위〉

일자	분쟁 경위
2003.3	후지쯔, 삼성SDI에 대해 고율의 라이센스 계약 요청
2004.2.7	삼성SDI, 미국법원에 후지쯔를 상대로 특허무효소송 제기
2004.4.6	후지쯔, 미·일 법원에 삼성 SDI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제기
2004.4.7	후지쯔, 도쿄 세관에 삼성SDI의 PDP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조치 신청
2004.4.21	도쿄 세관, 삼성SDI의 PDP 제품에 대해 통관보류결정 내림
2004.6.7	삼성SDI와 후지쯔, Cross License 형태로 특허협상 타결

〈LG전자 vs. 마쓰시타의 PDP 분쟁 경위〉

일자	분쟁 경위
2003.8	마쓰시타, LG전자에 대해 자사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라이센스 요청
2004.11.1	마쓰시타, LG전자 PDP 모듈에 대해 도쿄법원과 세관에 수입금지가처분 및 통관보류신청
2004.11.2	LG전자, 마쓰시타 한국법인(파나소닉코리아)을 상대로 • 서울지방법원에 특허침해증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산업지원부 무역위원회에 마쓰시타 PDP TV에 대한 수입제재조치 신청
2004.11.11	도쿄 세관, LG전자의 PDP 모듈에 대해 통관보류결정
2004.11.12	LG전자,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잠정조치 신청
2004.11.29	무역위원회,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TV에 대해 국내 수입 및 판매중지의 잠정조치 결정

중지의 잠정조치를 내림으로써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2. 금번 통관보류조치의 배경과 의미

세계 PDP 시장은 2003년 24억달러에 달한데 이어 올해 45억달러로 커지고 2007년에는 110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해 한·일 양국 업체는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싸움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2002년까지만 해도 세계시장 점유율이 19%에 불과했던 한국이 2003년에는 37%를 기록한 데 이어 2004년 말 46%로 확대되고 2005년에는 마침내 한·일간 시장점유율 역전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SDI와 LG전자가 세계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한국기업들은 놀라운 속도로 일본 기업들을 추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PDP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매우 크다. 반도체 및 LCD 산업과 마찬가지로 PDP 산업에서도 한국에 완패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기업들의 빠른 성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찍이 일본 정부는 2002년 7월 “지적재산권대강”을 작성, 당해 11월에는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3년 3월부터 일본 총리실 직속으로 지적재산권추진사업부를 설치하는 등 정부적 차원에서 자국기업의 지적재산권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2003년 4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관세정률개정법 또한 이러한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상기 배경을 검토해 볼 때, 2004년 두 차례에 걸친 한·일간 PDP 분쟁은

기업의 추월에 대한 일본 업계의 우려와 일본 정부의 자국 지적재산 보호 정책이 맞물려 우리 기업의 주력 유망산업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로 나타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세는 지적재산권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이의 중점육성을 통해 미래 국가경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원대한 지적재산전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IV. 정책적 대안 및 대응방안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 전략에 대응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적재산권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높은 정책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범부처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적재산전략을 제도적 관점, 산업정책적 관점, 교육체제 관점 등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통합할 것이 요구되며 정부부처간 유기적 공조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일본의 통관보류제도에 대응되는 우리나라의 법제도적 대안을 살펴보면, 현재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에 따른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권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일본의 관세정률법과 마찬가지로 특허침해품에 대해서도 세관의 통관보류 제도를 확대하도록 우리의 관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일본세관의 통관보류조치와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결정기관의 전문성, 권한범위 및 최종결정까지 소요기간 등이다. 무역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특허침해를 비롯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와 판정을 위한 전문가와 준사법적 절차를 갖추고 있는 반면, 세관의 본래적 업무는 특허침해판단과는 거리가 있다. 권한범위도 무역위원회는 국경선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으로

유입된 경우에도 수입 및 판매중지처분이 가능한 반면 세관은 국경선에서 침해 물품의 통관여부만을 관장한다. 최종 수입금지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전자는 적어도 수개월이상이 걸리는 반면 일본의 통관보류제도의 경우 1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내에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무역위원회의 수입중지 잠정조치에 의해 통관보류조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에서 양제도의 기능적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특허침해품에 대한 세관의 통관보류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산업적 파급효과에 대한 다양性和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관세법의 개정을 고려해본다면 우리나라도 일본의 통관보류조치에 대한 강력한 대응수단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04년 11월 29일 우리 무역위원회는 마쓰시타사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에 대해 PDP 제품의 수입금지 및 판매중지 잠정조치를 내렸으며 이는 현재 우리 기업이 일본의 통관보류 조치에 대해 강구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법적 대응책 중 하나이다.

V. 맷음말

2004년 두 차례에 걸친 한·일간 PDP 분쟁은 첨단기술분야에 있어 국제특허분쟁의 치열한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금번 PDP 분쟁은 세계 PDP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가 되며, 넓게는 우리나라와 대만, 중국 등을 겨냥한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전략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어쩌면 일본 정부는 금번의 PDP 분쟁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해 기나긴 특허전쟁의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식 강국으로 국가경제의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느냐 아니면 국민소득 1만불의 합정에서 정체되고 말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작금의 특허전쟁 속에서 찾을 일이다. ■